KOSHA GUIDE C - 2 - 2020

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김 경 순

○ 개정자 : (사)한국건설안전협회 최순주

○ 제정경과

- 2010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0년 11월 건설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반영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가설공사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)
-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)
- KOSHA GUIDE B-4-2011 (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)
- KOSHA GUIDE C-48-2012 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
- KOSHA GUIDE C-82-2020 (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사(RCD현장타설 말뚝 공사)안전보건작업지침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9호(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)
- OSHA 3358 01N2009(Deck Barge Safety)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사항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0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(Barge)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(Barge)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바지(Barge)선"이라 함은 강, 운하,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.
 - (나) "개인부양장치(PFD, Personal Flotation Device)"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라 하며 의식 또는 무의식 중 물에 빠진 사람의 입과 코를 수면위로 유지시켜 주는 개인용 보호구를 말한다.
 - (다) "방현재(Fender)"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에 생기는 충격력, 마찰력을 흡수하여 선박 및 부두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충물을 말한다
 - (라) "묘박(Anchoring)작업"라 함은 선박이 닻을 바다 속에 투입하여 선박을 정박 시키는 것을 말한다.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바지(Barge)선 이용 작업

4.1 바지선의 종류

- (1) 기능별 종류
 - (가) 비자항식 바지선 : 예인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바지선
 - (나) 자항식 바지선 : 비자항식 바지선 이외의 바지선으로 자체항해가 가능한 바지선
 - (다) SEP(Self Elevating Platform) 바지선 : 바지선에 고정용 장치(Leg)를 부착하여 수중의 견고한 지반에 고정할 수 있는 바지선



<그림 1> 건설공사용 비자항식 바지(Barge)선과 예인선



<그림 2> 건설공사용 SEP 바지(Barge)선

(2) 용도별 종류

- (가) 일반 바지선: 건설공사용 바지선, 모래운반용 바지선, 철강재운반용 바지선 등
- (나) 유조 바지선 : 석유제품 운반용 부선, 원유운반용 부선, 액체 화학품 운반용 바지선, 액화가스용 부선 등
- (다) 폐기물운반 바지선 : 폐기물운반용 바지선, 분뇨 운반용 바지선 등
- (라) 토운 바지선 : 준설토 운반용 바지선 등

(마) 해저조망 바지선 : 해저 잠수 조망용 바지선 등





<그림 3> 건설공사용 바지(Barge)선

- (3) 승선요원 유무에 따른 분류
- (가) 유인 바지선: 선루 또는 갑판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갖춘 바지선
- (나) 무인 바지선: 거주설비가 없는 바지선

4.2 바지선 작업 전 점검사항

바지선 작업 전 다음사항에 대하여 점검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.

- (1) 바지선의 선체외관, 갑판, 수밀격벽 등의 주요부재와 만재 흘수선하부 등 균열, 파손 여부
- (2) 적정한 방현재(Fender) 등의 정위치 부착 여부
- (3) 계류 관련 장치의 성능
- (4) 해치커버, 맨홀커버 등 수밀 상태
- (5) 만재 흘수선 및 적재량의 표시
- (6) 선체 내부에 생긴 오수 등의 배출여부
- (7) 모든 개구부, 선외 배출부, 해수흡입밸브 및 이들의 폐쇄장치의 작동 상태
- (8) 계류용 섬유로프 또는 와이어로프의 준비 상태
- (9) 유인 바지선인 경우에는 탑승자를 위한 구명장비의 준비 상태





<그림 4> 물양장 바지(Barge)선 고정 및 접안시설



<그림 5> 바지(Barge)선 구명환



<그림 6> 바지(Barge)선 고정용 로프

4.3 바지선 묘박(Anchoring)작업

- (1) 묘박을 하기 위한 앵커, 와이어로프, 체인 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결함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결함이 있는 것은 교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앵커 및 와이어로프는 스토퍼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로 고정하여야한다.
- (3)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작업책임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





<그림 7> 바지(Barge)선 앵커 <그림 8> 바지(Barge)선 앵커 와이어로프

- (4)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는 작업장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으며 부선 주 변에 장애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윈치, 윈드라스(Windlass) 작동상태, 스토퍼기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

<그림 9> 앵커 윈드라스



<그림 10> 선박 윈드라스

(6) 체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링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
4.4 기상 대비 안전점검 및 확인

- (1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은 운항 및 공사 중 기상악화로 인해 넘어지거나 운항하는 타선박 및 부속선과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(가) 이동항로의 안전성 확인

KOSHA GUIDE C - 2 - 2020

- (나) 적재된 장비의 고정 결속 상태
- (다) 예인선 등과의 결속은 긴결 되었는지 여부
- (라) 조난신호, 자동발신기,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의 구비여부
- (마) 법정표지 및 등화계획
- (바) 앵커 등 수중지지물 표시 준비상태
- (사) 선박의 적재 및 인양능력 검토

5. 바지(Barge)선 작업 안전조치 사항

5.1 일반사항

- (1) 호우, 홍수,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주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풍속이 15m/sec 이상, 강우량 10mm 이상, 시계 1km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2) 조류가 2~4노트(knot; 1knot=1.852km/h)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, 2 노트 이하에서도 바지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- (3) 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바지선의 크기에 따라 1.5~3.0m 이므로 바지선의 종류 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가설전선은 전기용량,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 은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, 침수, 낙뢰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5) 수상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수상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상·해상 등의 자연조건에 관련된 정보, 선박교통 및 어업 등 사회조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여야한다.
- (7) 수상공사에서는 반드시 항행관리를 하여야 한다. 이러한 항행관리는 공사용 작업

선박과 공사 해역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5.2 갑판에서의 안전

- (1) 계단, 출입구 등 이동통로와 작업장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, 장비나 자재를 쌓아 놓지 않아야 한다.
- (2) 누수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견고한 방법으로 자재를 적재하여야 한다.
- (4)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에는 경광등을 작동시켜야 한다.
- (5) 야간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호스나 파이프, 밸브에서 누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(7) 미끄러운 갑판 바닥은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서는 안 된다.
- (8) 필요시 동결 부분은 해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9) 전도나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계부분에 대조되는 색깔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.
- (10) 바지선위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-58-2012(사다리 안전작업 지침)에 따른다.

5.3 바지선의 수상 안전조치 사항

- (1) 바지선 갑판이나 작업장 끝단에 안전난간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구명복 또는 부양조끼 등 개인 부양장치(PFD, Personal Flotation Device)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바지선에 구명복 및 개인부양장치 등 개인용 보호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

하며, 착용할 때는 신체에 맞게 잘 조여주어야 한다.

- (3) 개인부양장치는 폐쇄된 기관실이나 장비 칸에 있다면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,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개인부양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바지선은 정기적으로 구명용 로프 등 안전시설과 작업환경, 기계적인 결함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5) 바지선 갑판 또는 다른 선체와의 간격이 30cm 이상일 경우, 통로나 사다리를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바지선 위에서 구조 절차 등이 포함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근로자에 게 주지하여야 한다.
- (7) 바지선 위 구조 장비는 대기 선박을 사용하거나, 적정 길이의 로프의 구명환(최소 30m)과 수면 1m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떨어졌을 경우 등 비상 시 구조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훈 련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.

5.4 바지선의 기계 및 장비 사용 안전조치 사항

- (1) 바지선에서 작업 시 기계와 장비 사용에 다른 협착, 추락, 충돌, 낙하, 감전, 화상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바지선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사용 전 모든 장비의 검사
 - (나)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제조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유지보수
 - (다)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
 - (라) 선박 또는 갑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적인 안전난간의 설치
 - (마) 지지 핀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, 보호 또는 잠금 장치로 안전한지 확인
 - (바) 비상 시 정지가 가능해야 하고, 장비운전 위치의 안전시설 설치
- (3) 호이스트, 크레인, 데릭 등 양중장치의 작업 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

금지하고, 인양작업 시 하부 출입 통제하여야 한다.

- (4) 안전모, 안전화, 보안경, 안전장갑 등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바지선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반드시 고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윈치(Winch) 주변에서 작업이나 작동할 때 윈치드럼에 협착, 파단 된 와이어로 프에 충돌, 와이어로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위치의 로프를 감을 때는 장비나 도구 사용
 - (나) 윈치 드럼의 덮개를 덮고 사용
 - (다) 윈치 와이어로프 긴장되어 있을 때 그 위나 아래, 앞 또는 나란히 서 있지 말 것(긴장된 로프의 양쪽 15도가 위험지대 범위)
 - (라) 윈치의 주요구조부와 용접부위, 전기 장치, 후크, 도르래 등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
 - (마) 윈치는 지정된 근로자 외 취급금지 조치
- (7)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용 로프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63조 및 KOSHA GUIDE M-81-2011(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8) 크레인의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절 제2관과 제3관 및 KOSHA GUIDE C-48-2012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에 따른다.

5.5 바지선의 작업환경

- (1) 탱크 등 밀폐공간에 출입 할 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조치 하는 등 산소결 핍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의 산소결핍 우려 장소에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- (가) 물이나 수증기가 존재하는 강철 탱크에서 녹이 발생한 곳
- (나) 탱크 안에 도장작업을 실시한 경우

- C 2 2020
- (다) 폐기물이 저장된 탱크
- (라) 갑판에서 누수한 연료가 탱크로 흘러 들어간 경우
- (3) 밀폐된 공간의 청소 등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H-80-2012(밀 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시행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4) 바지선의 화재예방을 위해 저장된 연료저장장소와 압축된 가스용기는 점화원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,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용접, 절단, 연소 그리고 분쇄 같은 화염과 불꽃(Spark)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자격이 있거나 숙련된 자
 - (나) 소화설비가 작업지역 근처에 있어야하고 언제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 상태를 유지
 - (다) 산소와 아세틸렌 호스 정리정돈 및 연료원의 방호조치
 - (라) 불티, 불꽃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창에 커버 설치
 - (마) 연료나 가스 냄새가 날 경우 화기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 해결 후 작업
 - (바) 용접이나 연소작업을 바지선 갑판위에서 할 때, 아래 선실 내부에 가연성 물질 과 가연성 공기의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 후 작업
 - (사) 전기배선 등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특히 스위치 등은 부식 등 상태 확인
- (6) 바지선의 선실 등에는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, 정 상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